

의안번호	2204245
의 퇴 인	강득구 의원
회 답 일	2024.10.02.
추 계 번호	24C403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 (교과용 도서의사용)	(제2항)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9조(교과용 도서의사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‘녹색제품1)’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구체적 사항이 교육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작 생산 규모 및 방식, 단가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

- 1)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“**녹색제품**”이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(적용범위) 이 법의 적용을 받는 **녹색제품의 범위**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**환경표지의 인증**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
 - 1의2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
 2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
 3.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

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- 법 제29조제2항(안 제29조제3항)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·저작·검정·인정·발행·공급·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, 이에 따라 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」이 제정되어 있음
 -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정도서의 가격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정하고,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함²⁾
- 개정안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‘녹색제품’에 해당하는 종지로 제작하도록 하여 교과용도서 구입비가 인상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녹색제품 종이를 교과용 도서의 본문에만 사용할 것인지 또는 교과서 표지나 부록 등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 적용범위와 개정안 시행후 대규모 녹색제품 사용에 따른 단가 변화 정도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
 - 일반적으로 녹색제품 종이는 기존 종이에 비해 단가가 높지만, 개정안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녹색제품으로 제작하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단가가 인하될 수 있고, 실제 교과용도서 인쇄·구입비용 인상여부 및 인상분은 편집, 인쇄방식과 녹색제품 종이의 가격변동 추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□ 이에 개정안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2) 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」 제32조(국정도서의 가격 등)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.
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」 제33조(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)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.(이하 생략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